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0 선고 2021가단6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경원, 이윤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1.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3704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986,044원과 그 중 7,626,944원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8. 7.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8. 22. 확정되었다.

나. D은 C은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바, D이 2021. 8. 8. 사망하자, C과 피고는 2021. 10. 6. C이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sup>1)</sup>

다. C은 2021. 10. 6.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무자력인 C이 D의 상속인으로서 보유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인바,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

1)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등기원인에 이 사건 계약일을 D의 사망일자인 2021. 8.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춰 볼 때, 등기원인에 기재된 ‘2021. 8. 8.’은 ‘2021. 10. 6.’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다.